

의안번호	2219287
의 퇴 인	한정애의원
회 답 일	2026.7.2.
추 계 번호	26B288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할 경우 추계기간 동안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는 총 94억 4,000만원 (연평균 18억 8,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국가수도기본계획 의 수립 (안 제4조)	현행(A)	-	-	-	-	-	-
	개정안(B)	-	4,720	-	4,720	9,440	1,888
	추가재정소요(B-A)					9,440	1,888

주: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국가수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규모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수요 전망, 공급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제6항)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 및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4조에 따라 국가수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주기가 단축될 경우,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횟수의 증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국가수도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용역비로 가정하였으며, 본 추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차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수행한 연구용역 비용을 유사사례로 준용함
 - 2022년에 「제1차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2)」이 수립되어 2027년에 타당성 검토를 수행 예정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에 「국가수도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및 변경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해당 연구용역에 소요된 비용은 47억 2,000만원임
 - 유사사례의 연구용역비는 현행 5년 주기의 타당성 검토를 전제로 산정된 비용으로, 개정안에 따라 타당성 검토 주기가 변경될 경우 연구용역비도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유사사례 관련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수행기관	수행기간	계약 금액	주요내용
국가수도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및 변경계획 수립	(주) 도화 엔지니어링	2025. 7.~ 2027.7.	4,720	·국가수도기본계획(정책편) 변경 수립 ·국가수도기본계획(시설편) 변경(총괄) 수립 ·국가수도기본계획(시설편) 변경(유역) 수립 ·물관리기본법 제27조, 탄소중립기본법 제14조,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부합성심의 및 위 원회 검토 등 행정절차 지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에 따른 총 재정소요에서 현행법에 따른 총 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

- 개정안 부칙은 개정 규정에 따른 최초 국가수도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시점을 203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¹⁾,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본 추계에서 준용한 유사사례는 타당성 검토 주기가 5년인 점을 고려하여 검토 시점의 2년 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반면, 개정안은 타당성 검토 주기가 2년으로 단축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용역을 검토 시점의 1년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구용역비는 2029년 및 2031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경우 추계기간 동안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는 총 94억 4,000만원 (연평균 18억 8,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국가수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주기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국가수도기본계획 의 수립 (안 제4조)	현행(A)	-	-	-	-	-	-	-
	개정안(B)	-	4,720	-	4,720	-	9,440	1,888
	추가재정소요(B-A)						9,440	1,888

주: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국가수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규모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안 부칙 제2조(국가수도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최초 국가수도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는 2030년으로 한다.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국가수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규모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